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2017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1. 12. 22.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19가합20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5. 접수 제32252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대물변제계약 해제(또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적고, 원고의 이 법원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2행 다음에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D, 피고 및 선정자들 명의로 순차 경료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 앞으로 중간생략등기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와 선정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8행의 “위 사실만으로”를 “위 사실과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9면 4행의 ‘각주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원고는 F 토지 매입 당시 자신이 1억 460만 원을 부담하여 그 1/2 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였고, 다만 이 사건 건물 매입대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D 측의 F 부동산 매수대금 부담 내역,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F 토지 매입 이전이후의 원고와 D 간 다수의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나타난 원고의 송금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을 상당 부분1) 지급하여(다만 피고도 원고가 F 토지에 관한 취득세 11,665,480원과 기타 경비 1,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5행 다음에 “이 사건 계약으로 D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음으로써 대출금 5억 원 중 원고가 부담하고 있었던 2억 5,000만 원의 채무도 D 측이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행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대물변제약정의 원인채무는 K은행 대출금 중 D 부담 부분 2억 5,000만 원, 2008. 4. 3.자 대여금 1,500만 원, N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기타 손해비용을 합한 3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D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는데, D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대물변제약정 원인채권의 만족을 얻어 결과적으로 대물변제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원인채무의 대물변제약정으로서가 아니라, F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D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는 차원에서 체결이행되었다고 보이며, 다른 한편 D의 위 화해권고결정은 이와 무관하게 K은행 대출금 6억 원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D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계약상 대물변제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은정, 판사 최항석, 판사 정경근

선정자 명단

1. B
2. Q
3. R. 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성북구 대3,306㎡말소할 지분 순위번호 갑구 302 공유지분 69426분의 787.43 전부순위번호 갑구 302 공유지분 69426분의 787.43 전부순위번호 갑구 302 공유지분 69426분의 787.43 전부

2. 제1항 기재토지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시장, 근린생활시설

지층1 시장 1,342.58㎡

지층1 주차장 496.99㎡

지층1 보일러실 161.26㎡

1층 시장 1,649.98㎡

2층 시장 1,649.98㎡

3층 시장 1,649.98㎡

4층 제1층근린생활시설(목욕장) 1,649.98㎡

5층 제1층근린생활시설(목욕장) 1,649.98㎡

내 점포 3층 호 153.52㎡말소할 지분 순위번호 갑구 22 공유지분 3분의1 전부순위번호 갑구 22 공유지분 3분의1 전부순위번호 갑구 22 공유지분 3분의1 전부

1) 원고는 D에게 갑 제14호증의 1, 2에 기재된 합계 88,925,48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